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0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2월 17일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학교 현장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확대 적용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,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시행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음.
- 이에 안 제3조제1항에서 규정된 ‘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·시행 의무’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로 수정함(안 제3조제1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 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<u>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조례안과 같음)</p>